

강사 운영 세칙

제정 2019.8.1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2조 3항에 따라 강사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강사라 함은 본 대학의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) ① 강사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,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대학 교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.

제4조(결격사유) 교원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.

제5조(임용기간)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, 임용기간이 만료된 강사에 대해서는 재임용 심사를 거쳐 재임용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본 대학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1. 6개월 미만의 병가 · 출산휴가 · 휴직 · 파견 · 징계
2. 6개월 이하 연구년
3. 직위해제 · 퇴직 · 사망

제6조(임용시기) 강사의 임용시작일은 매학기 시작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5조2항의 사유로 강사가 임용될 경우 특정일자로 할 수 있다.

제7조(당연퇴직)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
2.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
3.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자(이 경우 만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)

제8조(심사위원회) ① 학과인사위원회는 소속 학과 강사의 신규임용·재임용 등에 대한 심사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.

② 주임교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강사 신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 시 강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강사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③ 강사심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신규임용)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
② 강사는 학과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 임용한다.

③ 강사 신규임용(공개채용, 특별채용)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재임용) ① 강사에게는 신규임용 기간 및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, 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심사 절차를 보장하되 최대 3년의 임용 기간 경과 후에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절차에 따른다.

② 임용기간이 만료된 강사가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재임용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, 재임용 평가 기준은 따로 정한다.

③ 임용권자는 해당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강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신청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.

⑤ 학과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. 이 경우 그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⑥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.

1. 학과에서 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
2. 계약으로 정한 면직 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

제11조(임용계약) ① 강사의 임용은 임용권자와 임용대상자의 계약으로 한다.

② 강사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, 임금(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),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, 면직사유, 재임용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,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.

제12조(면직사유 등) ① 강사가 면직을 청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.

② 총장과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면직시킬 수 있다.

1. 교육과정 개편

가. 해당교과분야 이수학점이 축소되는 때

나. 교과목 이수구분이 변경되어 해당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

다. 해당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때

2. 학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

가.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직이 폐지되는 때

나.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담당하는 교과목이 폐지된 때

다. 제5조2항에 따라 임용된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

3. 강사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파면·해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
제13조(강의시간) ①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대 9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다.

②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제14조(근무조건 및 복무) ① 강사는 학사일정에 따라 담당과목의 강의, 강의계획서 작성, 담당 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기간 내 시험실시 및 평가와 성적 제출, 담당 과목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강사는 사립학교법, 교육관계법령 및 대학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윤리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강사의 사회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.

④ 원거리에서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교통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.

⑤ 강사는 재임용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) 까지 소속 학과주임교수에게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휴직) ① 휴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정관 제47조, 제48조, 제49조, 제50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. 다만, 강사에게는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정관 제47조의 제5호, 제6호, 제8호, 제9호, 제10호, 제11호, 제1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지 아니한 강사는 당연 퇴직한다.

제16조(징계)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강사가 있을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통보한다.

1. 교육관계법령, 정관 및 본 대학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
2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

3.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② 강사 징계에 관하여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제17조(급여) ① 강사에게는 담당교과목에 대한 강의시간, 강의 계획, 준비, 수강학생의 학습지도·평가·환류·학사업무처리 등 일체의 업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의 대가를 강사 강의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.

② 강사의 급여는 학기 단위로 산정한 후, 학기 중 급여와 방학 중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되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③ 강사가 수업을 맡지 않은 학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

④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.

제18조(세부사항)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지침이나 「고등교육법」, 「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정관」 및 본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